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776 제출연월일: 2024. 7. 1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·도 또는 특례시*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, 각 시·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* 특례시:「지방자치법」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,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.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제70조제2항 중 "제1항 각 호의 요건"을 "다음 각 호의 요건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
- 2.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,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지역일 것
- 3.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·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아 혂 행 개 정 제70조(관광특구의 지정) ① ----제70조(관광특구의 지정) ①관광 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・군 수 · 구청장의 신청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 다)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지정 한다.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 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·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・군・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공동으로 지 정을 신청하여야 하고, 둘 이상 의 시 ·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 ·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 여야 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

- 2.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,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
- 2.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광안내시설, 공공편 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 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.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

3. • 4. (생략)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법」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의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 략)

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
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
에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
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
<u>한다.</u>

- 3. 4. (현행과 같음)
- 1.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
- 2.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, 공공편 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
- 3.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

 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

 지 아니할 것
- ③ (현행과 같음)